

□ 변경 대비표

효력발생일 : 2022년 08월 26일

신한마운틴TDF2035증권투자신식[주식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차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2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외직연금 클래스 가입자적 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p>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3.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재증권, 특수재증권(법률에 의하여 적법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체권(취득시 신용평가금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이하, 생략)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자율 및 유사한 유사자금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현행과 동일) 3.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재증권, 특수재증권(법률에 의하여 적법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체권(취득시 신용평가금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이하, 현행과 동일)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자율 및 유사한 유사자금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p>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3. 나. (생략)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에 따른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이하 생략)</p>	<p>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3. 나. (현행과 동일)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재권보증회화사업부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이하 현행과 동일)</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1조(운용행위 간접 투자 등)	<p>제21조 (운용행위 간접 투자 등) ② 신입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개3일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 (운용행위 간접 투자 등) ③ 신입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개3일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제재)	<p>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재)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충족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만 단위로 원미만 쟁여 자리에서 4자5입하여 원미만 출체자리까지 계산한다.</p>	<p>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재)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충족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만 단위로 원미만 쟁여 자리에서 4자5입하여 원미만 출체자리까지 계산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30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p>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한다. 1. 대차대조표</p>	<p>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37조(보수)	<p>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을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시지에 따라 신락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을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시지에 따라 신락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	<p>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거의 결정 및 그 사유<설명></p>	<p>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거의 결정 및 그 사유<설명></p>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u>신설</u> <u>보</u> - 종류S-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현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u>신설</u> <u>보</u> <p>2.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2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2.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3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2.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2.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37조 (보수)</p> <p>2.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38조 (판매수수료)</p>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로트을선)를 통하여 가입할 있는 제외] - 종류S-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현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로트을선)를 통하여 가입할 있는 제외] - 종류 C-O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로트을선)를 통하여 가입할 있는 제외]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전자등록)</p> <p>③ (설명)</p> <p>16. 종류 C-O 수익증권</p> <p>제37조 (보수)</p> <p>③ (설명)</p> <p>16. 종류 C-O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0]</p> <p>다. 신설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p> <p>[2025년1월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p> <p>16. 종류 C-O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60]</p> <p>다. 신설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p> <p>[2025년1월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p> <p>16. 종류 C-O 수익증권</p> <p>제38조 (판매수수료)</p> <p>③ (설명)</p> <p>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g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j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r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종류 S-R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re 수익증권, <u>신설</u>: 없음</p> <p>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g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j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r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종류 S-R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re 수익증권, 종류 C-O 수익증권: 없음</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1부, 제2부</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정정전</p> <p>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u>신설</u></p>
	<p>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p> <p>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경선</p> <p>5. 운용전문인력의 윤용규정 업데이트</p> <p>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p>	<p>정정후</p> <p>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디플로트을선)(종류C-O) DX130</p>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
 - 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경선
 - 5 운용전문인력의 윤용규정 업데이트
 -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제1부, 제2부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u>신설</u></p>	<p>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디플로트을선)(종류C-O) DX130</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회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장: 제2부 6. 집합 투자기구의 구조</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u><신설></u></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별 구조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u><신설></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u><신설></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권용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u><신설></u></p> <p><u><신설></u></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회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장: 제2부 6. 집합 투자기구의 구조 <개속></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한마을은행TDE2035한국투자신탁(주식화-재간접형)(종류C-O) <u>[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디플트홀선)]</u></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별 구조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권용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u></p> <p><u>[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디플트홀선)(C-O)]</u>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u></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회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장: 제2부 11. 매입 일, 환매 및 전환기준</p>
	<p>(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회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회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u><신설></u></p> <p><u><신설></u></p>	<p>(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회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회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u>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u></p> <p><u>회적연금(디플트홀선)</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회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u><신설></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u><신설></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권용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u><신설></u></p> <p><u><신설></u></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권용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u></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회적연금(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침운용제도(디플트홀선)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종류별 기업자직에 관한 사항</p> <p>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설명〉</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퇴직연금(C-re)</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설명〉</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장: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침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을 인가받은 회사(금융당국 투자점검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설명〉</p> <p>〈설명〉</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종류별 기업자직에 관한 사항</p> <p>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설명〉</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퇴직연금(C-re)</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설명〉</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침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을 인가받은 회사(금융당국 투자점검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설명〉</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퇴직연금(C-O)</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금융제도(디플롭선)을 통하여 가입한 자</p>
<p>1. 클래스 신설(종류C-O)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장: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외></p>	<p>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다. 침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다.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p>〈설명〉</p>	<p>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다. 침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다.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p>수수료미정구-온라인-퇴직연금(디플롭선)(C-O)</p> <p>클래스 신설에 따른 수수료, 보수 및 비용 추가</p>
<p>2. 투자전략 분구 주가: 제2부 9. 침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1) 주요 투자전략</p> <p>이 투자신작은 침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침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침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구하는 목적으로 합니다.</p> <p>〈설명〉</p> <p>〈설명〉</p>	<p>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1) 주요 투자전략</p> <p>이 투자신작은 침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침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침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또 이 투자신작은 투자목표시행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으므로, 운용기간에 따라 대체적으로 투자목적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목적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율을 변형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p> <p>〈현행과 동일〉</p>
<p>3. 자본시장법 및 법령방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침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침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p> <p>-제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재증권, 특수재증권(법률에 의해 적립 설정된 범위가 발행한 제권을 말한다). 사제권(위탁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시모사체 및 신선유동화증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제 및 조달및집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제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 부과제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생략></p> <p>-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제, 주택저당증권 및 유통회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제, 주택저당증권 및 유통회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으로 부과제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p>	<p>제2부 8. 침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p> <p>-제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재증권, 특수재증권(법률에 의해 적립 설정된 범위가 발행한 제권을 말한다). 사제권(위탁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시모사체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제 및 조달및집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현행과 동일></p> <p>-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제, 주택저당증권 및 유통회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p>
<p>3. 자본시장법 및 법령방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침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침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나. 투자제한</p> <p>동일증권투자: 2. <생략>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제권과 주택저당증권으로 부과제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은 같은 주택저당증권으로 부과제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이나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2. <현행과 동일>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제권과 주택저당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은 같은 주택저당증권으로 부과제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이나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p>	<p>제2부 8. 침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나. 투자제한</p> <p>동일증권투자: 2. <현행과 동일>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제권과 주택저당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은 같은 주택저당증권으로 부과제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 주택저당증권을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이나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족부터 사속끼까지의 금융기관이 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p>

3. 자본시장법 및 범시행 법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u>대차마조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를 직전일의 수익증권 출증수좌로 나누어 1,000원 단위로 4사5ump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u>재무상태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를 직전일의 수익증권 출증수좌로 나누어 1,000원 단위로 4사5ump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자본시장법 및 범시행 법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2부 5.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거의 결정 및 그 사용 <u><신설></u>	제2부 5.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거의 결정 및 그 사용 <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용을 포함한다)</u>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경선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연평균: 14.44% 3종급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연평균: 14.31% 3종급 <u>최근현황경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u>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경선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최근현황경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u>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경선 : 제2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 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u>최근현황경신(기준일: 2022년 07월 31일)</u>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 모 업데이트 : 제2부 5. 운 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u>- 최근현황경신</u>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u>- 최근현황 경신</u>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 항 업데이트 : 제4부 1. 집 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u>- 최근현황경신</u> 라. 운용자산 규모 <u>- 최근현황경신(기준일: 2022년 07월 31일)</u>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1) 기재사항 변경

1. 워크업급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경선

4. 자본시장법 및 범시행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워크업급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획(RP)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u><신설></u> <u><신설></u>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획(RP)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u>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u>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 외입니다. <u>퇴직연금(디플트옵션)</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획(RP)을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플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투자전략 문구 추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 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신설></u>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 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 투자목적은 투자목표시기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운용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목적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목적이 낮은 자산의 비 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중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할 니다.</u>

<p>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실품서 경선 : (모각점보) 투자비용, 투 자실적 주이(연평균수익 률)</p>	<p>투자비용, 투자실적 주이(연평균 수익률)</p>	<p>투자비용, 투자실적 주이(연평균 수익률) <u>- 최근원활개선(기준일: 직전회계년도, 2022년 07월 31일)</u></p>
<p>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 개정사항방법: 기준가 격</p>	<p>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충좌수로 나누어 1,000화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출제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충좌수로 나누어 1,000화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출제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 모 업데이트: 운용전문인 력</p>	<p>운용전문인력</p>	<p>운용전문인력 <u>- 최근원활개선(기준일: 2022년 07월 31일)</u></p>